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of Discount Method on Calculation of Lost Earnings)

마승렬*
Seungryul Ma

<국문초록>

국민의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기존의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와 같이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함에도 그간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할인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양자 간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적용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함으로써 피해자 측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문 주제어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현실세계, 과소평가, 할인방식

* 상명대학교 특임교수, RMI경영연구소 손해액평가센터장, 손해사정업협회 회장
(samhan12@hanmail.net)

I. 서론

상실수익액(lost earnings)은 자동차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때 그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취업가능기간(또는 가동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을 말한다¹⁾.

우리나라는 그간 상실수익액(일실이익) 현가산정 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복리(compound)로 할인하는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왔고 법원과 국가배상법은 동일한 연 5%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단리(simple)로 할인하는 방식인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다.²⁾ 자동차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채택하여 오다가 1986년 9월 약관개정 시 라이프니츠식으로 변경한 이후 최근까지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을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이프니츠식과 호프만식 두 가지 방법은 공통적으로 미래 순차적으로 지급될 임금에 대하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할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연 5%의 엄격한 이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둘 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산정 방식이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어도 복리 할인하는 라이프니츠식은 과도한 중간이자 공제로 인해 단리 할인하는 호프만식에 비해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산정하게 된다(마승렬·김정주(2014), 마승렬(2020) 등 참조).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 판결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실수익액의 자동차보험

1) 동일한 의미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실수익액”, 법원에서는 “일실이익”으로 표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상 지급기준(라이프니츠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법원(호프만식)에서 판결하는 금액 간에 발생하는 현저한 금액 차이는 피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기존의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³⁾, 관련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1월 이후 계약분부터 상실수익액의 할인방식이 라이프니츠식에서 호프만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과 법원 판결금액 간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9.30.)에 의하면 상실수익액의 할인방식을 호프만방식으로 변경시 사망·후유장해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⁴⁾ 따라서 호프만식으로 산정방법이 변경되면 현실적으로 동일한 사고에서 평가되는 상실수익액이 법원판결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소송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⁵⁾.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내용의 개정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적손해배상건 관련 소송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자동차 인적사고로 인한 소송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실수익액 현가산정방법의 적정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승렬·김정주(2014)의 연구에서는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경우 임금상승률(g)과 할인율(i)의 장기 평균값 수준이 거의 유사하므로 순할인율($i - g$)의 값을 현행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영(zero)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결

3)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1.9.30.) 참조.

4)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2.6억원) → 단리방식(4.2억원)으로 변경이 예상된다고 한다.

5) 참고로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에서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승렬(2020)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단리할인법을 버리고 복리할인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이 요구되는데, 이때 임금상승률뿐만 아니라 더욱 현실성 있는 할인을 적용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호프만식 산정방법 또한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하는 비합리적인 산정방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확대 측면에서는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더욱 더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일실이익 현가산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임금상승률뿐만 아니라 할인을 적용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성있는 이자율 적용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단리할인법을 버리고 복리할인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이 요구된다⁶⁾. 이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전상쇄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적용도 가능할 것이며(마승렬·김정주(2014)), 피해자가 별도로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액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일실이익액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비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황원재(2022)는 중간이자 공제에 적용될 할인은 시장이율과 물가변동율, 임금인상율 등을 종합하여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특정한 할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액의 변동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여 수리적 설명을 시도하는 완전상쇄 방식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일실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식(1)의 설명에서와같이 완전상쇄방식은 황원재(2022)에서의 주장과 같이 시장이율과 물가변동율, 임금인상율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시장이율과 임금상승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 서로 상쇄되어 순할인율을 0%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산과정에 과잉배상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II.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1. 실무에서의 적용방법

2022년 1월 이전 계약 건 즉, 호프만식으로 개정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사망사고 상실수익액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참조).

■ 사망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text{- 라이프니츠계수} = \frac{1}{(1+i)^1} + \frac{1}{(1+i)^2} + \dots + \frac{1}{(1+i)^N}$$

(i=5/12%, N=취업가능월수)

따라서 금번 약관개정으로 자동차보험은 약 36년 만에 다시 라이프니츠계수 적용에서 그 이전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단리할인방식인 호프만식 산정방식에서의 누적현재가할인계수인 호프만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text{- 호프만계수} &= \frac{1}{(1+i \times 1)} + \frac{1}{(1+i \times 2)} + \dots + \frac{1}{(1+i \times N)} \\ &= \sum_{t=1}^N \left[\frac{1}{1+(0.05/12) \times t} \right] \end{aligned}$$

(i=5/12%, N=취업가능월수)

2.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문제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이프니쯔식 산정방법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상실수익액의 현재계산시 임금상승률은 고려해주지 않고 할인율만 적용하여 현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평균임금상승률과 평균할인율을 고려하여 상실수익액 현가를 계산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면 상실수익액 산식은 식(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V = E_0 \sum_{t=1}^N \left(\frac{1+g}{1+r} \right)^t = E_0 \sum_{t=1}^N \left(\frac{1}{1+j} \right)^t \quad (1)$$

여기서 PV = 상실수익액 현가
 E_0 = 사고시점 임금
 N = 가동가능월수
 g = 평균 명목임금상승률
 r = 평균 명목이자율
 j = 순할인율($j = (r - g)$)

위 식에서 순할인율(j)은 개략적으로 $j = (r - g)$ 의 값을 가지는데, 마승렬·김정주(201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이 평균적으로 서로 완전히 상쇄되어 $j = 0$ 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상쇄방법에 의한 상실수익액은 $PV = E_0 \times N$ 과 같은 매우 간단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시점 연령 20세 여자를 가정한 경우 호프만식 산정방법과 완전상쇄방법 간의 상실수익액 현재계산에 적용되는 누적할인계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본 사례의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호프만식 산정방법은 현실세계(완전상쇄방법)의 44%만을 반영해 주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⁷⁾.

7) 호프만식 산정방법에서의 누적할인계수는 손해배상 실무상 “호프만계수”라 하는데 호프만계수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sum_{t=1}^N \left[\frac{1}{1 + (0.05/12) \times t} \right]$ 의 값이다(마승렬(2020) 참조). 한편, 본 연구

<표 1> 호프만식 산정방법과 완전상쇄방법 간의 누적할인계수 비교

피해자 가정	호프만식 방법(A)	완전상쇄방법(B)	비율(A/B)
연령 20세 여자	240.0	540.0	44%

- (주) 1. 손해발생시점 적용임금은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1원으로 가정하고($E_0=1$ 원), 가동가능기간은 65세까지로 가정하였다.
2. 법원은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게 되면 과잉배상이 된다는 이유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한다.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면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하게 되는데, 상기 사례자의 경우 $N=540$ 으로 414개월을 초과해 상실수익액은 상한액인 240.0으로 제한된다. 물론 이러한 제한 역시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마승렬(2020) 참조).

이와 같이 라이프니츠식에 비해서는 유리하지만, 호프만식 역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할인을 적용과 관련하여 호프만식 산정방법에서와같이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일실이익 현가산정시에 호프만식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동진(2017), 이보환(201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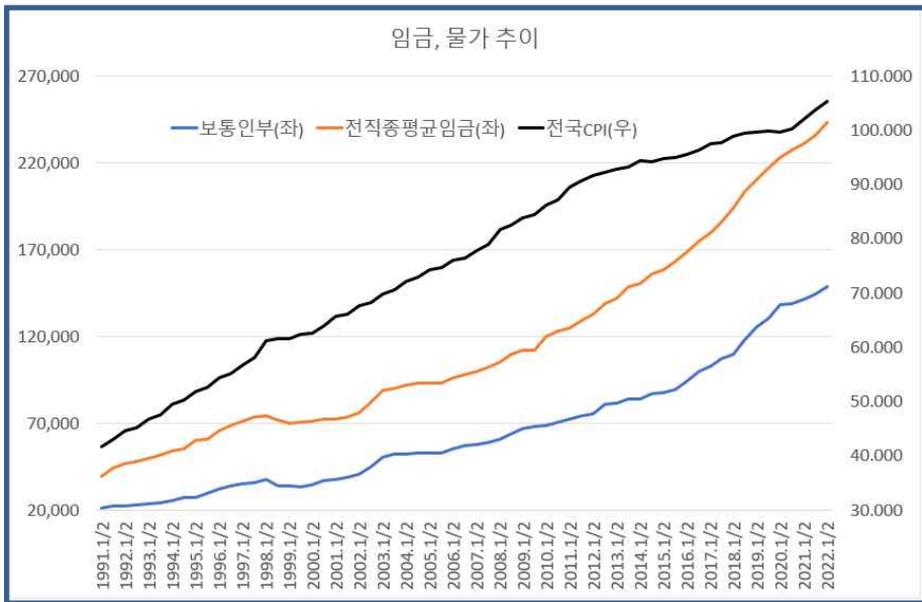
이보환(2010)은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원피고 간에 공평히 분담시키는 제도이고 일실이익 배상액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원상으로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래 임금상승 내지 물가상승 문제는 과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대 경제학 이론 및 정부나 제 기관의 전망에 의해 그 증명을 다 한 것으로 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의 식(1)에서의 누적할인계수는 $\sum_{t=1}^N \left(\frac{1+g}{1+r} \right)^t$ 또는 $\sum_{t=1}^N \left(\frac{1}{1+j} \right)^t$ 의 값이다. 완전상쇄방법에서의 순할인율(j) 값은 영(zero)이므로(즉, $j = (r-g) = 0$), 완전상쇄방법에서의 누적할인계수는 가동가능기간과 동일한 N 이 된다.

Ⅲ. 임금과 할인율 추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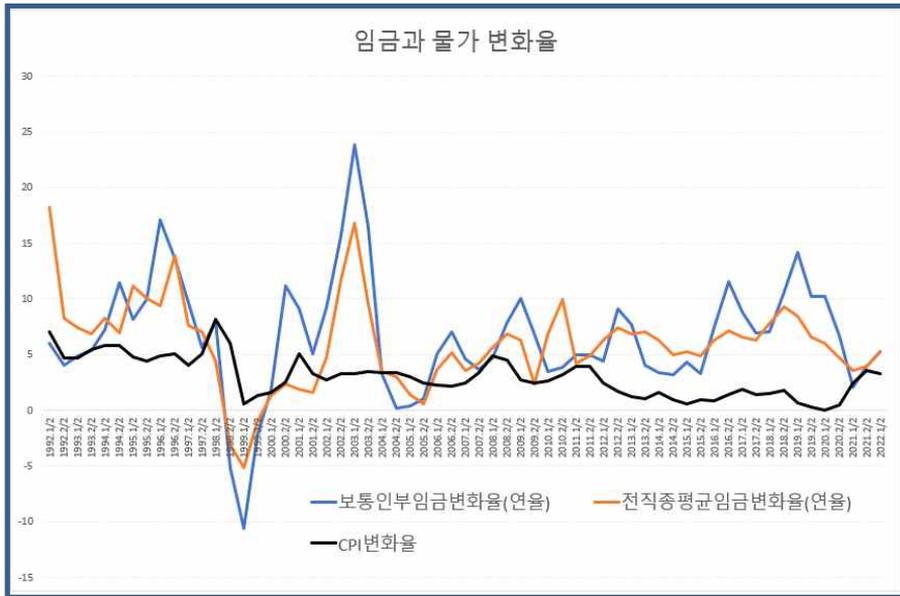
1. 명목임금과 물가 추이

199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까지 보통인부 노임단가, 전직종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이들 시계열은 모두 <그림 1>에서와 같이 우상향의 추세를 가지는 시계열임을 알 수 있다. 199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상반기의 증가 정도를 보면 보통인부는 7.04배, 전직종평균임금은 6.17배, 소비자물가는 2.52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림 1> 임금과 물가 추이

8) 보통노임단가와 전직종평균임금은 각각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씩 공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와 전체직종평균임금을 의미하고, 전국CPI는 통계청 DB에서의 전국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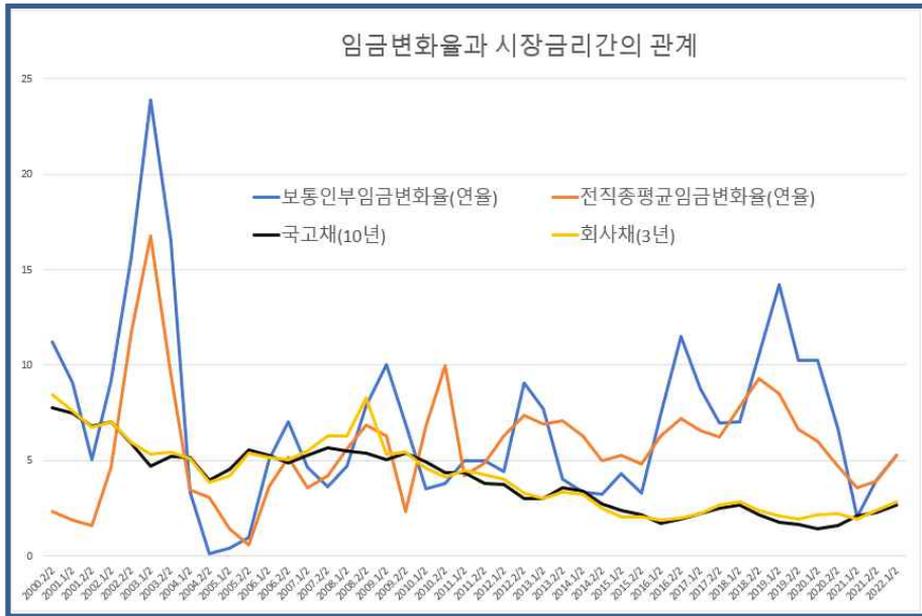
<그림 2> 임금과 물가의 변화율 추이

임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IMF 외환위기 시 일시적 음(-)의 변화율을 보여준 때도 있었지만 1992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간의 보통인부노임, 전직종평균임금 변화율과 CPI변화율은 <그림 2>에서와 같이 모두 양(+)의 값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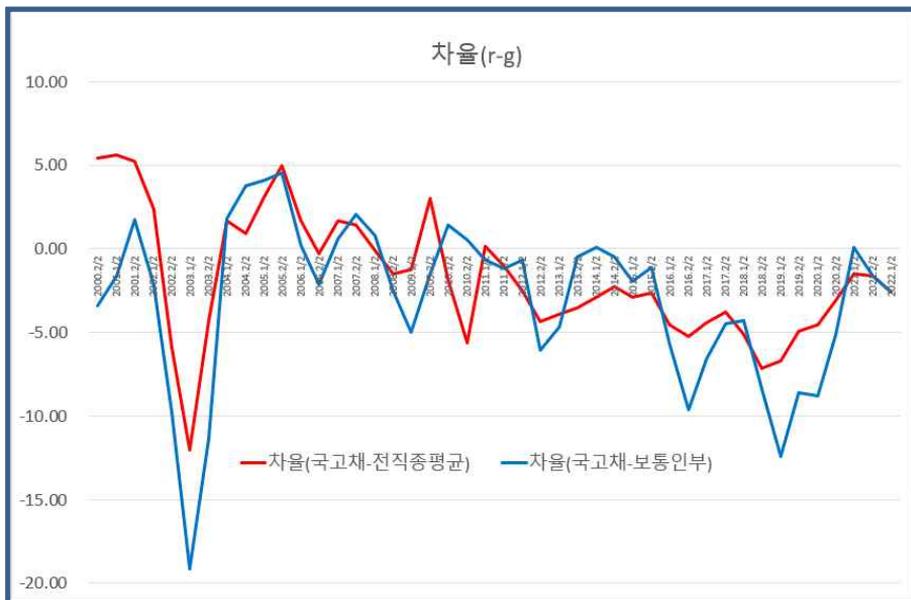
2. 시장금리와 임금변화율 간의 관계

임금변화율과 시장금리를 동일평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림 3>에서와 같이 대부분 시점에서 임금변화율이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장금리(r)에서 임금변화율(g)을 차감한 차율($r-g$) 즉, 순할인율(j)은 <그림 4>에서와 같이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앞의 식(1)에서 순할인율($j = (r-g)$)의 값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이는 일실이익의 현가 계산시 할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증해 주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는 법원과 자동차보험 실무에서 연 5%의 양(+)의 이자율로 할인하는 방식인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현실세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림 3> 임금변화율과 시장금리 간의 관계



<그림 4> 순할인율 시계열

3. 정부의 경제변수 전망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월 31일(금)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⁹⁾ 재정추계에 사용한 경제변수 전망치는 <표 2>와 같이 확인된다.

<표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에서의 경제변수 가정

(단위:%)

	경제변수	'23~ ' 30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80	기간 평균
비관	실질경제성장률	1.5	0.9	0.2	0.0	-0.3	-0.3	0.2
	실질임금상승률	1.5	1.4	1.3	1.2	1.1	1.1	1.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중립 (기본 가정)	실질경제성장률	1.9	1.3	0.7	0.4	0.2	0.2	0.7
	실질임금상승률	1.9	1.9	1.8	1.7	1.6	1.6	1.7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낙관	실질경제성장률	2.4	1.8	1.1	0.9	0.7	0.6	1.1
	실질임금상승률	2.4	2.4	2.3	2.2	2.1	2.1	2.2
	실질금리	1.4	1.4	1.3	1.2	1.2	1.2	1.3
	물가상승률	2.2	2.0	2.0	2.0	2.0	2.0	2.0

(주) 1.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치는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값을 나타낸다.

2.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

<표 2>에 의하면 미래 경제상황을 중립적으로 본 경우 명목금리와 명목임금상승률에 미치는 물가상승률 효과가 같다고 가정하면 실질금리(1.3%)와 실질임금상승률(1.7%)의 차율이 순환인율(j)이 되는데 그 값은 -0.4%의 값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미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경우에는 순환인율이 0.1%(=1.3%-1.2%), 낙관적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0.9%(=1.3%-2.2%)가 된다.

9)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3.31. 참조).

이와 같이 미래 예상되는 경제변수(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부의 장기 평균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순할인율값도 평균적으로 영(zero)을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값이 됨을 알 수 있다.

4. 소비자물가와 임금의 국제 비교

소비자물가와 임금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므로 인해 다른 값을 가진다. <표 3>은 일본의 후생노동성(2023)에서 1995년~2020년간의 각국의 소비자물가와 임금의 변화율을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이다.

<표 3> 소비자물가와 실질임금의 변화율의 국제 비교

(단위: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한국
소비자물가변화율	0.2	1.4	1.3	2.0	2.1	2.7
실질임금변화율	0.0	0.9	1.1	1.7	1.4	-

(주) 자료: 日本 厚生労働省(2023).

앞의 <표 2>의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2023)에서 중립적인 경제상황의 가정에서 전망한 우리나라의 2023년~2030년간 실질임금변화율은 1.9%이며, 2023년~2080년간의 전체 평균 실질임금변화율은 1.7%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이 과거 25년간 보여준 실질임금변화율이 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실수익액 산정시 적용해야 할 순할인율 수준은 이들 경제변수들에 대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과거에 그래왔었던 것처럼 일본에서의 적용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산정방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준다.

5. 외국의 할인을 적용 사례¹⁰⁾

독일은 인신손해의 경우 정기금배상이 원칙이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지급도 가능한데, 일시금의 현재계산시 적절한 할인을 선택하는 것과 장래의 급여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의 고려여부는 각 재판부 또는 (재판외 화해의 경우) 교섭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프랑스는 일실회익의 현재 산정을 위해 재판실무상 과거부터 다수의 현재산정표가 활용되어 왔는데 현재산정표는 학자, 생명보험사, 사회보험사, 법률저널 등에 의해 발표되고 있고,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할인을 제안하고 있으며 근래의 예로 저명한 법률저널인 Gazette du Palais가 펴낸 “2016년 손해배상 정기금 현재산정표”가 제시하는 할인은 연 1.04%인데 이 값에는 무위험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예측치가 반영되어 있으며 할인방법으로는 복리할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일실회익의 현재계산시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준(準)공적 산정표인 Ogden Tables를 사용하는데 이 산정표는 음(-)의 할인을도 고려하고 있는데 연 -2.0%로부터 연 +3.0%까지 0.5% 단위로 복수의 이자율에 대한 할인계수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실회익 산정전문가를 forensic economist라 하는데 경제학자, 회계사, 계리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forensic economist들이 산정한 일실회익을 근거로 법원에서 손해액을 다투게 된다. forensic economist의 협회 중 하나인 NAFE(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Economics)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조사에서 회원들이 일실회익 산정 시 적용한 순할인율(j) 수준을 확인해 보면 평균값 0.98%, 중앙값 1.00%, 최소값 -3.60%, 최대값 4.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 케이스별로 음(-)의 순할인율 값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서는 이자율이 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경우 순할인율은 음(-)의 값이

10) 독일, 프랑스, 영국의 사례는 이동진(2017)에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며, 미국의 사례는 마승렬(2020)에서의 내용, 일본 사례는 김훈주(2019)에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다.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들의 연구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적용되게 된다. 이는 달리 설명하면 일실이익 산정 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의 금액이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질입금상승률(=명목입금상승률-물가상승률) 만큼 할증 되어짐을 의미한다.

일본은 일본민법 제404조에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 이율은 연5푼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우리 민법 제379조에서 처럼 우리와 동일한 법정이율 연5푼의 고정이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2016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정이율은 3%로 인하되고 3년을 주기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1%씩 이율이 변동하는 것(변동이율제)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 이전에도 일본민법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연5푼의 이율을 민사법정이율로 정하고 있었지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실수익액 산정시 연2%-4%의 이율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IV. 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 차이

일실이익 산정시 적용하는 순할인율(j)의 수준에 따라 현가의 크기는 달라지는데 그 크기의 변화는 가동가능기간에 비례한다. 즉,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할 적용임금 수준을 가정하였을 때 가동가능기간이 많이 남겨져 있는 상대적 저연령 계층 피해자가 가동가능기간이 짧은 상대적 고연령 계층 피해자에 비해 일실이익 현가는 더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망당시 피해자 연령이 각각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인 경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과거 적용하였던 라이프니츠식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과 최근 바뀐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 그리고 법원에서 적용하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을 각각 계산하였다¹¹⁾. 그리고 이들 금액과 순할인율(j)을

11) 자동차보험에서도 호프만식으로 산정방법이 바뀌었지만, 자동차보험의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법원에서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에서는 임금적용 시 세전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반면에 자동차보험에서는 세후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1%, 0%, -1%를 적용하여 계산한 각각의 일실이익 현가를 계산하여 상호 그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표 4>는 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차이 예시

(단위: 천원)

연령	N	보험회사		법원	현실모형		
		라이프니츠	호프만	호프만	j=1%	j=0%	j=-1%
20세	540월	475,664 (0.85)	532,000 (0.95)	560,000 (1.00)	1,097,264 (1.96)	1,260,000 (2.25)	1,554,589 (2.78)
30세	420월	439,215 (0.78)	532,000 (0.95)	560,000 (1.00)	872,382 (1.56)	980,000 (1.75)	1,156,178 (2.06)
40세	300월	379,183 (0.84)	430,799 (0.95)	453,473 (1.00)	639,136 (1.41)	700,000 (1.54)	789,042 (1.74)
50세	180월	280,309 (0.90)	297,241 (0.95)	312,885 (1.00)	395,216 (1.26)	420,000 (1.34)	451,863 (1.44)
60세	60월	117,462 (0.94)	118,490 (0.95)	124,727 (1.00)	136,765 (1.10)	140,000 (1.12)	143,561 (1.15)

- (주) 1. 일실이익 계산에 사용한 임금은 법원에서는 세전소득인 월 3,500,000원, 보험회사에서는 실효세율을 5%로 가정하여 세후소득인 월 3,325,000원(=3,500,000원*95%)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¹²⁾
2. 생계비: 1/3 가정
3. 호프만계수: 최대 240으로 제한 (피해자 20세, 30세의 경우)
4. 산정된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상계전 금액이다 (즉, 피해자 무과실의 경우 가정).
5. 괄호 속 수치는 법원의 호프만식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법원의 호프만식=1.00)에 대한 다른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의 금액을 기초로 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 크기 및 비율(법원 호프만식=1.0)을 계산해보면 호프만식 산정방법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어느 정도 과소평가하는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가동가능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대적 저연령계층(예: 20세, 30세)일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12) 참고로 고용노동부 DB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직종 월평균임금은 3,757,000원으로 확인된다. 안중석(2016)은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와 실효세율을 분석하였는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체표본 실효세율은 0%-5%,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전체표본 실효세율은 0%-7%정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 근거하여 실효세율을 5%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는 <표 4>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차이를 비교 목적으로 동일 평면 위에 함께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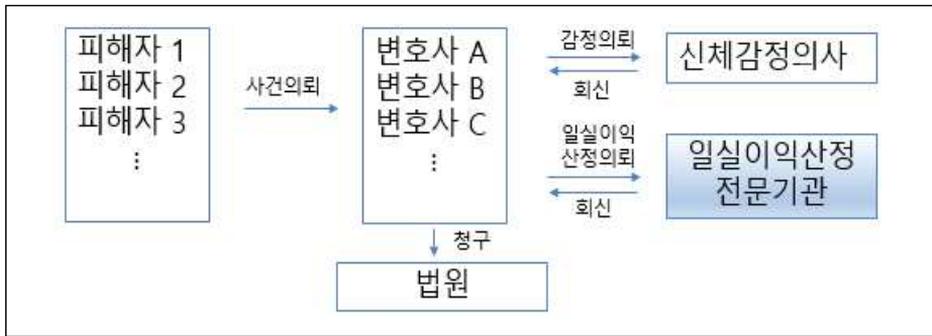


<그림5>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방법 간의 금액차이 비교

V.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실이익 산정시 계산에 임금상승률을 고려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간의 관계인 적용 순할인율 ($j = (r - g)$)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별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림 6>에서와 같이 향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 6> 상실수익액(일실이익) 산정전문가 활용 흐름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 및 피해자 간의 보상 공정성 측면 그리고 현재의 실무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마승렬(2020) 참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등 인적손해의 손해배상 건을 다루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수입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다투어 주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과소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는 현행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계산의 편의성 등만 고려하여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방법 적용으로 피해자 측의 권익을 확대해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23.
- 김훈주,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2019, pp.197-219.
- 마승렬·김정주,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4, pp.311-337.
- 마승렬,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487호, 2020, pp.8-23.
- 안종석, 소득 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이동진,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4권 제1호, 2017, pp.291-334.
- 이보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제3판, 육법사, 2010.
- 황원재, “일실이익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 pp.75-111.
- 日本 厚生労働省, 経済指標の国際比較, 2023.

Abstract

As part of a plan to improve the auto insurance system to expand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system was recently reformed to change the discounting method for lost earnings from using the existing compound interest method (Leibniz method) to a simple interest method (Hoffmann method). This is because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lost earnings, it is advantageous for consumers to apply a discount using the simple interest method as in courts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but auto insurance companies have historically calculated relatively small compensation amounts by applying a compound interest metho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Hoffmann method applied in courts and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also a discount method that underestimates the real world, we should not simply continue to insist on applying the current Hoffmann method by considering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ibniz and Hoffmann methods. bu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substantially exp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ctims by applying a new method of calculating lost earnings that has economic rationality.

※ **Key words** : auto insurance, lost earnings, real world, underestimate, discount method